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충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81
----------	---------

발의연월일 : 2021년 8월 13일

발 의 자 : 이충숙, 송순효, 김현희, 김병진,
김동협, 이종숙, 김성한, 최동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되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안전보안관 위촉, 대표단 구성, 활동, 활동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안 제7조)

다.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라. 시행규칙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나. 협조부서: 안전관리과

다. 입법예고: 2021. 8. 17. ~ 8. 22.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

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호선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
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
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
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안전보안관 위촉, 대표단 구성 등 안전
보안관 운영과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8로 이동 <2017. 1. 17.>]